

#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 외 1인

#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 . . .  
발 의 자: 김근한·장미경 의원(2인)  
찬 성 자: 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  
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  
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11인)

### 1.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 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7조

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부서검토: 총무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의 구미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활동
3.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 안보의식 개선 사업

4.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홍보 및 교류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총무과

조 례 명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li><li>▪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li></ul></li></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li><li>○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li><li>○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li><li>○ 포상(안 제7조)</li></ul>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li></ul>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대효과: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적 활동의 안정적 추진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li><li>○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li><li>○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li></ul>	

#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보조금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비용이 산출될 것이나, 예산 소요는 예상되더라도 현 단계에서 이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4. 작성자

- 총무과 자치행정팀 김정석(☎054-480-6765)